



국토해양부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건설진흥실-383(2012. 8.21)호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도급받은 공사 중 극히 일부분이라도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경우 직접시공의 예외로서 직접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3.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에 있어서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공사만으로는 직접시공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시공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급받은 공사에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경우라도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공사만으로 직접시공 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까지 직접시공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해양부장관



수신자

전결 08/28

주무관 **최두석** 행정사무관 **전성배**

협조자

시행 건설경제과-4438 (2012.08.28.)

접수 건설진흥실-424 (2012.08.28.)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 <http://www.mltm.go.kr>

전화 02-2110-8314 전송 02-503-6439 / choeds@mltm.go.kr

/ 비공개(5)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